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1997년 5월 9일 의료개혁위원회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공청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보험은 소득구조와 노출률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험료 부과방법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는 자영자와 피용자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자영자에 대한 227개 지역조합(시지역 130개 및 군지역 97개), 피용자에 대한 145개 직장조합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 현행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로 인하여 파생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보험재정의 안정과 관리운영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어 보험급여의 충실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첫째, 다수의 조합에 의한 독립적인 재정운영으로 위험분산의 기능이 제한되고 조합간 재정격차가 불가피하며, 특히 보험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조합의 존재는 보험급여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둘째, 보험진료비 예측의 확실성이 낮아 보험재정이 불안정한 소규모 조합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관리운영면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일탈하고 있음.
 - 셋째, 다수 조합의 존재는 적용인구의 조합간 이동에 따른 자격관리업무의 중복을 초래하여 관리운영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음.
 - 넷째, 조합의 재정자립과 관리운영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할 제도적·재정적 유인장치가 미흡함.

현행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관리운영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어 보험급여의
충실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2. 정책건의

가. 소규모 조합의 통합 유도

-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소규모 지역조합부터 통합하여 지역조합의 수를 감축시키도록 추진함.
 - 강제통합으로 파생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 여부는 통합대상으로 지정된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 통합에 응하는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액을 증액 지원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도록 함.
 - 지역조합수의 감축에 따른 조합 규모의 확대는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동직장조합의 경우 단위사업장에게 광역자치단체내의 직장조합을 최소 2~3년을 주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합간 경쟁에 의해 공동조합의 규모 확대를 유도함.
 - 이를 위하여 1999년까지 공동직장조합간의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
 - 경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부가급여의 범위와 수준, 보험료를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
 - 이러한 조치는 경쟁에 의한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합의 자율적 운영 권한과 책임 부여

-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효율적인 활용 등 관리운영의 성과를 제고할 책임을 조합에 부여하도록 함. 이를 위하여,
 - 조합대표 이사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조합의 직원인사 자율성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 정부는 보험료 조정의 범위만을 결정하고 개별 조합이 그 범

- 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조합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본인부담진료비 보상금, 장제비, 분만수당 등 부가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여 보험급여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함.
- 조합이 예방보건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 이를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고와 재정공동사업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의료보험환자 수진에 대하여 조합의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비를 감시하고 낭비를 방지하도록 함.

다. 조합간 구조적 위험요인의 분산기능 확대

- 조합간 구조적 위험요인(예: 소득수준, 노령화)에 따른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현행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진료비의 전체 조합간 공동부담 사업을 60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함.

소규모 조합의 통합 유도,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 권한과 책임 부여, 조합간 구조적 위험요인의 분산 기능 확대 등과 같은 방향으로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